

 신안산대학교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	규정번호 2-1-30 제정일자 2022. 6. 2. 개정일자 2024.3.20. 책임부서/팀·계 전산정보원
---	--------------------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신안산대학교 학칙」 제15조에 따라 신안산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의 정보자산 관리 및 정보보안 운영 · 정보화사업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화사업” 이란 정보화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정보시스템 구축, 소프트웨어 개발, DB 구축, 정보통신망 구축, 정보자원 유지관리 등 정보화를 통한 행정업무의 효율 향상 및 서비스 개선 추진 사업을 말한다.
2. “정보자원” 이란 정보시스템을 구성하는 서버, 주변장치, 네트워크 등의 하드웨어자원, 시스템소프트웨어, 응용프로그램 등의 소프트웨어자원,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시스템 구축과정에서 생산된 문서자원을 말한다.
3. “정보시스템” 이란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로서,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의 모바일 앱, 하이브리드 앱을 포함한다.
4. “정보화사업부서”란 정보화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정보시스템 구축 · 고도화 · 운영 · 유지관리, 소프트웨어 개발 · 구매, 하드웨어 구매,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운영부서”란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사전협의”란 「전자정부법」 제67조에 따라 정보화사업을 발주하기 전에 중복성, 상호연계, 공동이용, 개인정보보호, 사이버보안, 공공데이터 개방, 과업 범위의 상세화 및 적정 사업기간의 산정 등에 대한 사항을 검토 · 조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업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학 정보화에 대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수립
2. 대학 학사행정업무 정보화를 위한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 관리
3. 대학 정보통신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관련 정책 수립
5. 교직원 정보화 교육관련 지원업무
6. 그 밖의 대학 정보화에 관련되는 사항

제4조(정보화사업계획의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①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이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정보화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정보화사업을 수행할 계약상대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제안요청서를 작성하는 경우 표준서식을 참고하여 요구사항을 상세하게 작성 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화사업 사전협의) ①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사업목표, 세부내용 등을 포함한 정보화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교무처와 별지 1호 서식을 통해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30., 2024.2.22., 2024.3.20.>

1. 사업비가 2천만 원 이상인 정보화사업
2. 정보시스템을 개발 또는 도입하여 학내에 배포하기 위한 정보화사업
3. 학내 다른 부서와의 상호연계 또는 공동이용과 관련된 정보화사업
4. 홈페이지 구축 및 모바일 응용소프트웨어(APP) 제작 사업
5. 그 밖에 사업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보화사업

② 교무처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사전협의 대상사업에 대하여 유사사업, 중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정보화사업 추진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3.30., 2024.2.22., 2024.3.2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지 않는 단순 유지관리·운영, 노후장비 교체, 단순 하드웨어 구매,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 회선 증설 등의 정보화사업은 사전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①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제5조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신안산대학교 정보보안지침」 제3장 제7조에 따라 정보보안 담당관에게 보안성 검토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에 따른 사전협의 신청과 병행 할 수 있다.

② 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이 보안성 검토 및 보안적합성 검증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는지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제7조(정보화위원회) 대학 정보화 사업에 관한 주요 사항 및 정보보안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화 위원회를 둔다.

제8조(기타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신안산대학교 전산정보실 규정은 이 규정이 공포된 날부터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의 제5조(정보화사업사전협의)는 2024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